

「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심현정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9. 2.
- 회부일자 : 2024. 9. 5.
- 상정일자 : 2024. 9. 5.

2. 제안이유

- 국가유공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적용 대상(안 제4조)
-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(안 제5조)
-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(안 제6조)
- 위반차량 조치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국가보훈기본법」 제5조에서 ‘지자체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규범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’ 규정하고 있고, 「주차장법」 제6조에서 지역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구조 등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적용 범위)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안 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에서는 평창군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,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, 노외주차장,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.

- 안 제8조(위반차량 조치)에서 국가유공자 대상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명예 선양 및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의 형식과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 가능하다고 판단됨.

□ **추진 배경**

-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통해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보훈 예우문화 확산 추진

□ **추진 경과**

- (추진사항)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제정 및 추진사항 지속 협의
 - (지자체) 전국 지자체 표준안 권고('23.2.14) ⇒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전상정('23.4.4.) ⇒ 정부청사 우선 주차구역 설치 협조('23.4.27.) ⇒ 전국 지방의회 조례제정 협조('23.6.26.)

- ▶ (설치기준) 전체 주차장 면수에 따른 일정 규모(30면) 이상 자율적 설치
- ▶ (지원대상) 독립·국가·참전·특수임무·5.18·고엽제·보훈보상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
- ▶ (확인방법)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
- ▶ (위반조치) 이동 권고

- (정부청사) 13개 합동청사 중 9개 17면 설치
(세종4, 춘천1, 경남1, 경북1, 대구2, 대전1, 고양1, 인천4, 광주2)

□ **전국 지자체(243개) 설치 현황: 39개 지자체(16%) 조례 제정, 255면 설치**

□ **향후계획**

- 지자체 및 정부합동청사 주차장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속 추진
- 민간 다중이용시설(고속도로 휴게소, 공항, 대형할인마트, 백화점 등)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추진